##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86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 : 송옥주・이수진(비)・윤미향

안호영 • 양이원영 • 김영주

김민철 • 윤준병 • 장철민

오영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 이전에 조성이 추진된 매립·간척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하천 및 매립·간척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.

따라서,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고, 대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·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.

또한, 「습지보전법」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

립·간척지 중에서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기관 및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현재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25개소 중 하천이 8개소임에도 불구하고, 현행 「습지보전법」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,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(안 제2조제2호).
- 나.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(안 제8조제5항 신설).
- 다.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(안 제11조제2항).
- 라.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

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).

마. 「습지보전법」 시행('99.8월) 당시 「공유수면매립법」 및 「골재채취법」에 의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조항(제8조)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,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기관 및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(안 법률 제5866호 습지보전법 부칙제3조 단서 신설).

###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늪"을 "늪, 하천"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「하천법」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「하천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존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적용하고,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4.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
- 5.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(水)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군 병력"을 "「하천법」 제27

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 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군 병력"으로 한다.

법률 제5866호 습지보전법 부칙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면허 또는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내륙습지"란 육지 또는 섬에	2
있는 호수, 못, <u>늪</u> 또는 하구	<u>늪</u> , 하천
(河口) 등의 지역을 말한다.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습지지역의 지정 등) ① ~	제8조(습지지역의 지정 등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
	또는 시·도지사가 「하천법 <u>」</u>
	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을 습지
	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
	우 「하천법」 제6조제2항에 따
	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
	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u>⑤</u> ・ <u>⑥</u> (생 략)	<u>⑥</u> ・ <u>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
	같음)
제11조(보전계획의 수립·시행)	제11조(보전계획의 수립·시행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u>&lt;후단</u>	<u>다만,</u>
신설>	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하천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#### <신 설>

#### ③ (생략)

제13조(행위 제한)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역(이하 "습지보호지역"이라 한다)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・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

한 보존계획을 수립・시행할
때 적용하고, 이 경우 해당 하
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라
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
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
와 유지에 관한 사항
5.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(水)
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
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행위 제한) ①

구여 내 승지ㅂㅎ지여드에 과

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<u>군</u>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법률 제5866호 습지보전법 부칙
제3조 (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
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
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
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
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
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
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
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
하지 아니한다. <단선 신설>

	「하천법」
제27조부터 제30	)조에 따라 홍
수예방을 위하여	필요한 하천
공사와 유지보수	사업을 시행
하는 경우, 군 ㅂ	병 <u>럭</u>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을 적용할 수 있다.